

서울고등법원 2015. 9. 4 선고 2015나2004021(본소), 2015나2004038(반소) 판결
[소수지분매수청구 · 주주지위 확인의 소]

재판경과

서울고등법원 2015. 9. 4 선고 2015나2004021(본소), 2015나2004038(반소) 판결
서울남부지방법원 2014. 12. 18 선고 2013가합108359 판결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, 피항소인A

피고(반소원고), 항소인B

변론 종결 2015. 7. 24.

판결 선고 2015. 9. 4.

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. 12. 18. 선고 2013가합108359(본소),
2014가합101638(반소) 판결

주 문

1. 피고(반소원고)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(반소원고)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가. 본소 : 피고(반소원고, 이하 '피고'라고만 한다)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(이하 '이 사건 주식'이라고 한다)이 원고(반소피고, 이하 '원고'라고만 한다)의 소유임을 확인한다.

나. 반소 :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가 피고임을 확인한다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.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가 피고임을 확인한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,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6행의 "증인 F"을 "제1심 증인 F"으로 고치고,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3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,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『나아가 피고는,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수익 배분 내지 공로주로 지급한 것이라면, 원고가 퇴사할 당시 퇴직금과 별도로 차량을 주고, 원고의 차용금채무 3,000만 원을 면제하여 줄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퇴사할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과 별도로 차량을 주었고, 원고의 차용금채무 3,000만 원을 면제하여 준 사실은,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8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.

그러나 이 사건 주식은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원고 명의로 배정된 것으로 원고의 퇴사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점,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면, 위와 같은 차량 제공 등의

조건으로 그 주식의 반환을 구하지 아니한 이유 또한 쉽게 설명되지 않는 점, 피고의 위와 같은 배려는 반대로 보면 원고가 소외 회사를 위하여 상당한 기여를 하고 퇴사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게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, 위와 같이 원고가 퇴직금과 별도로 차량을 제공받고, 차용금채무를 면제받았다고 하여,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으로 볼 수는 없다.

[한편 피고는 의정부지방법검찰청 고양지청에 '원고가 피고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이 사건 주식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'는 취지로 형사 고소하였으나, 검찰은 2015. 5. 29. '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거나, 원고가 위 주식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'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, 피고는 위 처분에 대하여 검찰 항고를 제기하였다(갑 제7호증, 을 제29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).』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,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김인겸

판사한소영

판사신종오

별지